

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 ~ 2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(안 제16조)

(법령 개정 전) 조례로 정하는 자

(법령 개정 후)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

⇒ 현행 문구로는 조례로 명시된 자만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“조례로 정하는 자”로 명확히 표현

※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

나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의무사항 반영(안 제24조)

○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다.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순화(안 제8조, 제15조 ~ 제17조)

○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⇒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

○ 훼손·망실된 ⇒ 훼손되거나 없어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3조·제22조의2,
같은 법 시행령 제17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6. 12. 7. ~ 12. 27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없음
- (6) 경남도내 다른 시·군 조례 개정 현황
 - 개정완료: 해당없음(부산광역시 수영구 개정완료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군수는 법”을 “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”을 “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·제2항 중 “훼손·망실된”을 “훼손되거나 없어진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영 제17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5.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조치계획

제17조제2항 중 “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”를 “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<u>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u> 1. 「지방공기업법」상의 지방공사·공단 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</u> 6. ~ 7. (생략)</p>	<p>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<u>① 영 제17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 1. ----- 2. ----- ----- ----- ②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-----</u> 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) ① (생략)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<u>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</u>----- -----</p>
<p>제24조(구성)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2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----- -----<u><단서 삭제>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